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,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(치안감 1명, 총경 1명, 총경 또는 4급 1명, 경정 4명, 경감 1명, 경위 4명, 3·4급 또는 총경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7. 00. ~ 7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경찰국) ①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.

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·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,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총경으로,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,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.

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에 따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·감독에 관한 사항
2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

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

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우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우에 관한 사항

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8조제7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2의2. 소방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

별표 2 중 총계 “1,622”를 “1,6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593”을 “1,594”로 하며,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다음에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총경 1”을 신설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1”을 “23”으로 하며, 경찰공무원 계 23 다음에 “치안감 1”을 신설하고, 그 다음에 “총경 1”을 신설하며, 그 다음에 “총경 또는 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경정 “8”을 “12”로, 경감 “2”를 “3”으로, 경위 “1”을 “5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총계 “1,634”를 “1,64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605”를 “1,606”으로 하며, 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다음에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총경 1”을 신설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1”을 “23”으로 하며, 경찰공무원 계 23 다음에 “치안감 1”을 신설하고, 그 다음에 “총경 1”을 신설하며, 그 다음에 “총경 또는 서기관 1”을 신설하고, 경정 “8”을 “12”로, 경감 “2”를 “3”으로, 경위 “1”을 “5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0조의2(경찰국) ① 경찰국장은</u> <u>치안감으로 보한다.</u> <u>② 경찰국에 총괄지원과 · 인사</u> <u>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</u> <u>되,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 ·</u> <u>서기관 또는 총경으로, 인사지</u> <u>원과장은 총경으로, 자치경찰지</u> <u>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</u> <u>각각 보한다.</u> <u>③ 총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</u> <u>분장한다.</u> <u>1. 「정부조직법」 제7조에 따</u> <u>른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· 감</u> <u>독에 관한 사항</u> <u>2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</u> <u>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</u> <u>0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</u> <u>원회 안건 부의 및 같은 조 제</u> <u>2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에</u> <u>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</u> <u>찰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④ 인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</u> <u>분장한다.</u>

제18조(안전정책실) ① ~ ⑥ (생략)

⑦ 안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2. (생략)

<신설>

13. (생략)

1.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찰청장 임명 제청에 관한 사항

2. 「경찰공무원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계급정년 연장 승인을 위한 경유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징계 승인을 위한 경유에 관한 사항

⑤ 자치경찰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「지방자치법」 제184조 등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

제18조(안전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-----.

1. ~ 12. (현행과 같음)

12의2. 소방청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

13. (현행과 같음)

⑧ ~ ⑯ (생략)

⑧ ~ ⑯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2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49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.		.		.	
			<u>1,622</u>		<u>1,635</u>	+13
	.		.		.	
	.		.		.	
일반직 계			<u>1,593</u>		<u>1,594</u>	+1
	.		.		.	
	.		.		.	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		4			
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총경</u>			<신 설>		<u>1</u>	+1
	.		.		.	
	.		.		.	
경찰공무원 계			<u>11</u>		<u>23</u>	+12
<u>치안감</u>			<신 설>		<u>1</u>	+1
<u>총경</u>			<신 설>		<u>1</u>	+1
<u>총경 또는 서기관</u>			<신 설>		<u>1</u>	+1
경정			<u>8</u>		<u>12</u>	+4
경감			<u>2</u>		<u>3</u>	+1

경 위	<u>1</u>	<u>5</u>	+4
-----	----------	----------	----

[별표 2의2]

행정안전부 공무원 정원표(제49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• <u>1,634</u>	• <u>1,647</u>	+13
일반직 계	• • <u>1,605</u>	• • <u>1,606</u>	+1
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 기관 또는 수석전문관	• • 4	• •	
<u>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총경</u>	<신 설>	<u>1</u>	+1
• •	• •	• •	
경찰공무원 계	<u>11</u>	<u>23</u>	+12
<u>치안감</u>	<신 설>	<u>1</u>	+1
<u>총경</u>	<신 설>	<u>1</u>	+1
<u>총경 또는 서기관</u>	<신 설>	<u>1</u>	+1
경정	<u>8</u>	<u>12</u>	+4
경감	<u>2</u>	<u>3</u>	+1
경위	<u>1</u>	<u>5</u>	+4